# 서울특별시 시민청(市民聽)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583

제출년월일: 2019년 3월 29일 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"제로페이")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시민청 대관료를 감면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시민청 대관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음(안 제10조제2항)
- 나.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대관료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(안 부칙 제2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지방자치법」등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## 다. 기 타

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- (2) 입법예고(2019. 2. 21. ~ 3. 13.) 결과: 의견없음
- (3)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: 별도 첨부

## 서울특별시 시민청(市民聽)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민청(市民聽)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.

제10조 중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)으로 대관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하나만 적용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) 제 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혂 행

별시가 후원하거나 공익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관료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<신 설>

개 정 안

제10조(대관료 감면) 시장은 서울특 제10조(대관료 감면) ① 시장은 서울특 별시가 후원하거나 공익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관료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> ②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 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 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 다)으로 대관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 하여는 대관료의 100분의 30 범위에 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에 따라 대관료 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감면율 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.

#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시 시민청 대관료를 할인하는 경우, 대관료 수익금(세외수입)이 할인율 만큼 감소함(약 18백만원 예상)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## 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 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-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# 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

 ※ 시민청 대관료 수익금 현황(3개년)을 근거로 할인율 30% 적용시 연간 약 80,000천원 수익금중 약 18,000천원 감소가 예상됨
<시민청 대관 수익금 현황(2016~2018)>

(단위: 천원)

구 분	2016년도	2017년도	2018년도	3개년 평균수익금	감소 수익금 (30%할인시)	비고
계	84,561	78,437	79,312	80,770	17,957	5.2시행 예정
1분기	22,470	18,596	20,674	20,580	_	
2분기	26,059	21,788	21,633	23,160	6,948	
3분기	17,779	19,836	12,085	16,567	4,970	
4분기	18,253	18,217	24,920	20,463	6,139	

#### 4. 작성자

서울특별시 시민소통담당관 박 근 호 (02-2133-6416)